

1. 투자신탁의 명칭

- 하나 UBS 블루칩바스켓주식투자신탁(V-1 호)

2. 신탁약관 변경시행일: 2008년 12월 26일

3.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조 판매기준	신 설	<u>종류 A 수익증권</u> :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종류 C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u> <u>종류 C2 수익증권:</u> <u>간접투자기구 등</u> <u>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 전용</u>
제20-1조 판매기준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5%	<u>종류 A 수익증권</u> :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u>0.5%</u>
제23조 환매수수료	신설	<u>종류 C, C2, C-e 수익증권</u>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 30일이상 90일미만 : <u>이익금의 30%</u>
제40조 투자신탁보수 (연1000분의)	(총보수 : 15.4) 운용: 4.446 , 판매: 10.374 수탁: 0.4, 일반사무수탁: 0.18 신 설 신 설 신 설	<u>종류 A 수익증권</u> (총보수 : 15.4) 운용: 4.446 , 판매: 10.374 수탁: 0.4, 일반사무수탁: 0.18 <u>종류 C 수익증권</u> (총보수 : 20.4) 운용: 4.446 , 판매: 15.374 수탁: 0.4, 일반사무수탁: 0.18 <u>종류 C2 수익증권</u> (총보수 : 5.326) 운용: 4.446 , 판매: 0.3 수탁: 0.4, 일반사무수탁: 0.18 <u>종류 C-e 수익증권</u> (총보수 : 17.2) 운용: 4.446 , 판매: 12.174 수탁: 0.4, 일반사무수탁: 0.18

투자신탁약관 변경대비표

■ 하나UBS블루칩바스켓주식투자신탁(V-1호)

구분	현 행	변 경(안)
제1조 (총칙)	신 설	<u>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7조 (자산운용회사등의 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u>일반사무관리회사가</u>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96,517,415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96,517,415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u>수종의 수익증권의</u>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9조 (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u>수종의</u>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②자산운용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 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제13조 (수익권의 분할)</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u>수익증권의 종류별로</u>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u>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u>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자산운용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제5항 신설]</p>	<p>①자산운용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종류 A 수익증권</u> 2. <u>종류 C 수익증권</u> 3. <u>종류 C2 수익증권</u> 4. <u>종류 C-e 수익증권</u> <p>⑤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p>	<p>①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p> <p>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한다.</p> <p>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u>을 적용한다.</u></p> <p>①기준가격[<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u>]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u>]"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u>당해 종류 수익증권</u>]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u>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u>]의 기준가격은 1좌는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u>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u></p>
--	---	---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종류 C 수익증권: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종류 C2 수익증권
 - 가. 간접투자기구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
 - 다.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
 - 라.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p>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u>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0-1조(판매수수료)</p>	<p>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0.5로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투자신탁의 상환금 등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①판매회사는 <u>종류 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u></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u>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종류 수익증권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 <u>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u></p> <p>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투자신탁의 상환금 등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p>

	<p>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u>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 (환매수수료)</p>	<p>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u>당해 종류</u></p>

		<p>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u>당해 종류</u>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u>종류 C, C2 수익증권 및 종류 C-e 수익증권</u> 가. <u>30일 미만: 이익금의 70%</u> 나. <u>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u></p>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p>	<p>[제3항 신설]</p>	<p>③<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p>	<p>[제4항 신설]</p>	<p>④<u>제28조제3항에</u> 의한 수익자총회는 <u>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발행된</u></p>

		<p><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u>로 본다.</p>
<p>제39조 (자산운용지시등)</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투자증권의 매매</u> 2. <u>장내파생상품의 거래</u> 3. <u>단기대출</u> 4. <u>간접투자증권(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한한다)의 매매</u> 5. <u>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일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지는 거래를 말한다]</u>
<p>제40조 (투자신탁보수)</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당해 종류</u>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보수율에 <u>당해 종류 수익증권에</u>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p>

년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374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46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374
-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2. 종류 C 수익증권

-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46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374
-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3. 종류 C2 수익증권

-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46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4. 종류 C-e 수익증권

-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p><u>1000분의 4.446</u> 나. <u>판매회사보수율</u> : 연 <u>1000분의 12.174</u> 다. <u>수탁회사보수율</u> : 연 <u>1000분의 0.4</u>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u> : 연 <u>1000분의 0.18</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u></p> <p>② 제1항에서 “<u>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u>”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u>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u>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p><u>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u></p>

		<p><u>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u></p> <p>1. <u>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u></p>
<p>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p>	<p>①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p>[제2항 신설]</p> <p>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p><u>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3조 (이익분배)</p>	<p>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p> <p>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p>	<p>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u>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u></p> <p>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p>
<p>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p>	<p>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u>당해 종류 수익증권</u>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u>종류별 매수 수익증권</u>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제47조 (미지급금의 처리방법)</p>	<p>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점에 가능한 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p>	<p>①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는 법제 1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투자신탁의 미지급금을 지급한다.</p> <p>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 다른 투자신탁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제48조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p>	<p>[제3항 신설]</p>	<p><u>③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9조 (신탁약관의 변경)</p>	<p>[제5항 신설]</p> <p>⑤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u>⑤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⑥이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p>